

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최은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96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8. 4.

발 의 자 : 최은석 · 김선교 · 이종배
구자근 · 김승수 · 유상범
추경호 · 김상훈 · 박수영
안철수 · 김기웅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미국발 관세협상 기조 및 미중 갈등의 지속으로, 세계 주요국
가들의 자국기업 보호정책이 심화되고 있음. 이러한 국제경제 흐름 속
에서 각 국은 치열한 기업 유치 및 자국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
각고의 노력을 펼치고 있는 상황임.

특히 안정적 일자리 창출과 민생 경제 활성화 등 자국 경제 성장
촉진을 위해 기업들의 투자 및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법인세 인하 노
력을 경주하는 세계적 흐름이 거세지고 있음.

이에 우리나라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%에서 24%로 1%p인하하는
조치를 취했으나 여전히 OECD 평균 법인세율인 23.5%에 비해 높은
수준임으로, 기업의 투자 의욕을 높이고 해외 자본 유출을 방지하여
‘코리아 디스카운트’가 심화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법인
세 인하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.

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세계 주요국에 비해 높은 법인세율이 유지되고, 경직된 자본시장 과세 체제가 운영되면서, 기업 투자 의욕이 낮아지고 해외 자본 유출 및 ‘코리아 디스카운트’ 심화가 초래되고 있음.

이에 현행 4개인 과세표준 구간을 2억원 이하와 2억원 초과 2백억원 이하, 2백억원 초과 3개 구간으로 단순화하고, 과표 2억원 이하 구간에 대해서는 8%의 세율을, 2억원 초과 2백억원 이하 구간에 대해서는 18%의 세율을 2백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20%의 세율을 각각 적용함(안 제55조제1항).

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5조제1항제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과세표준	세율
2억원 이하	과세표준의 100분의 8
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	1천600만원 + (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)
200억원 초과	35억8천만원 + (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)

제55조제1항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과세표준	세율
200억원 이하	과세표준의 100분의 19
200억원 초과	38억원 + (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)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세율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세율은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

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
제55조(세율)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(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·상생협력 추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. 이하 “산출세액”이라 한다)을 그 세액으로 한다.	제55조(세율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												
1. 내국법인의 경우(제60조의2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)	1. ----- ----- -----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과세표준</th>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세율</th>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억원 이하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과세표준의 100분의 9</td>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천800만원 + (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9)</td></tr> </table>	과세표준	세율	2억원 이하	과세표준의 100분의 9	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	1천800만원 + (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9)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과세표준</th>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세율</th>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억원 이하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과세표준의 100분의 8</td>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천600만원 + (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)</td></tr> </table>	과세표준	세율	2억원 이하	과세표준의 100분의 8	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	1천600만원 + (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)
과세표준	세율												
2억원 이하	과세표준의 100분의 9												
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	1천800만원 + (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9)												
과세표준	세율												
2억원 이하	과세표준의 100분의 8												
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	1천600만원 + (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)												

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	37억8천만원 + (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1)	200억원 초과	35억8천만원 + (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)
3천억원 초과	625억8천만원 + (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)		
2.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		2. ----- -----	
과세표준	세율	과세표준	세율
200억원 이하	과세표준의 100분의 19	200억원 이하	과세표준의 100분의 19
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	38억원 + (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1)	200억원 초과	38억원 + (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)
3천억원 초과	626억원 + (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)		
② (생략)		② (현행과 같음)	